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04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정동만・이종성・윤창현

최승재 · 강민국 · 강기윤

전봉민 • 박성민 • 황보승희

이주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 관계 법령"이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으로써, 공 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금융"을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격사유)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	
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u>그 밖의 금융</u> 관	3 <u>「보험업법」 등</u>
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u>그 밖의 금융</u> 관	4
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5년</u>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